

대기 / 수질 관련 법제의 이해

2015. 9. 5.
이소영 변호사

목차

0.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 - 법령 보는 법

1. 관련 법령의 체계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념

3. 폐수/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규제

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정보청구권의 시대

0.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 - 법령 보는 법

- 법제처 홈페이지 (www.law.go.kr)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령”
 - 고시, 훈령, 예규 → “행정규칙”
 - 지자체의 조례, 규칙 → “자치법규”
- 그 밖의 Source
 - 판례
로앤비 (유료) <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무료) <http://glaw.scourt.go.kr>
 - 법제처 법령해석 www.moleg.go.kr
 - 국회 입법정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

0.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 - 법령 보는 법

법제처 홈페이지 (www.law.go.kr)

- “법령체계도”의 효용성

The screenshot shows the Law.go.kr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tabs for '법령' (Laws), '행정규칙' (Administrative Rules), '자치법규' (Local Regulations), '판례·해석례등' (Cases and Interpretations), '별표·서식' (Annexes and Forms), '학칙·규정' (School Rules and Regulations), and '법령기타' (Other Laws).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filters for '법령명' (Law Name), '법령분문' (Law Category), '조문내용' (Article Content), '조문제목' (Article Title), '부칙' (Transitory Provisions), and '제·개정문' (Revision/Amendment). The '법령체계도' (Legal System Map)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e title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약칭: 수질수생태계법)' (Act on the Protection of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s (Abbreviatio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s Act)) and its purpose. The '제1장 총칙'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section includes '제1조(목적)' (Article 1 Purpose) and '제2조(정의)' (Article 2 Definitions).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약칭: 수질수생태계법)
 [시행 2015.3.25.] [법률 제12519호, 2014.3.24., 일부개정] [최종공포내용](#)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4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2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50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2
 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적절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0.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 - 법령 보는 법

법령체계도 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a web browser window with the URL <http://www.law.go.kr/lsStmndInfoP.do?lsiSeq=152312>. The page title is "법령체계도" (Law Hierarchy Diagram). The main heading is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otection of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s), with a sub-heading "[시행 2015.3.25] [법률 제12519호, 2014.3.24, 일부개정]" (Enforcement Date: 2015.3.25, Law No. 12519, 2014.3.24, Partial Amendment).

Navigation tabs include: 상하위법 (Hierarchy), 신규법 (New Laws), 판례 (Cases), 현재결정례 (Current Decisions), 법령해석례 (Law Interpretations), 행정심판례 (Administrative Case Law), 입법추진현황 (Legislation Progress), NAVER, d2m, and 국민신문고 (Public Notice).

Below the tabs, there are links for "본문" (Main Text), "제·개정문" (Amendment Text), "연혁" (History), "3단비교" (3-stage Comparison), "신구조문대비표" (New Structure Comparison Table), and "생활법령정보" (Living Law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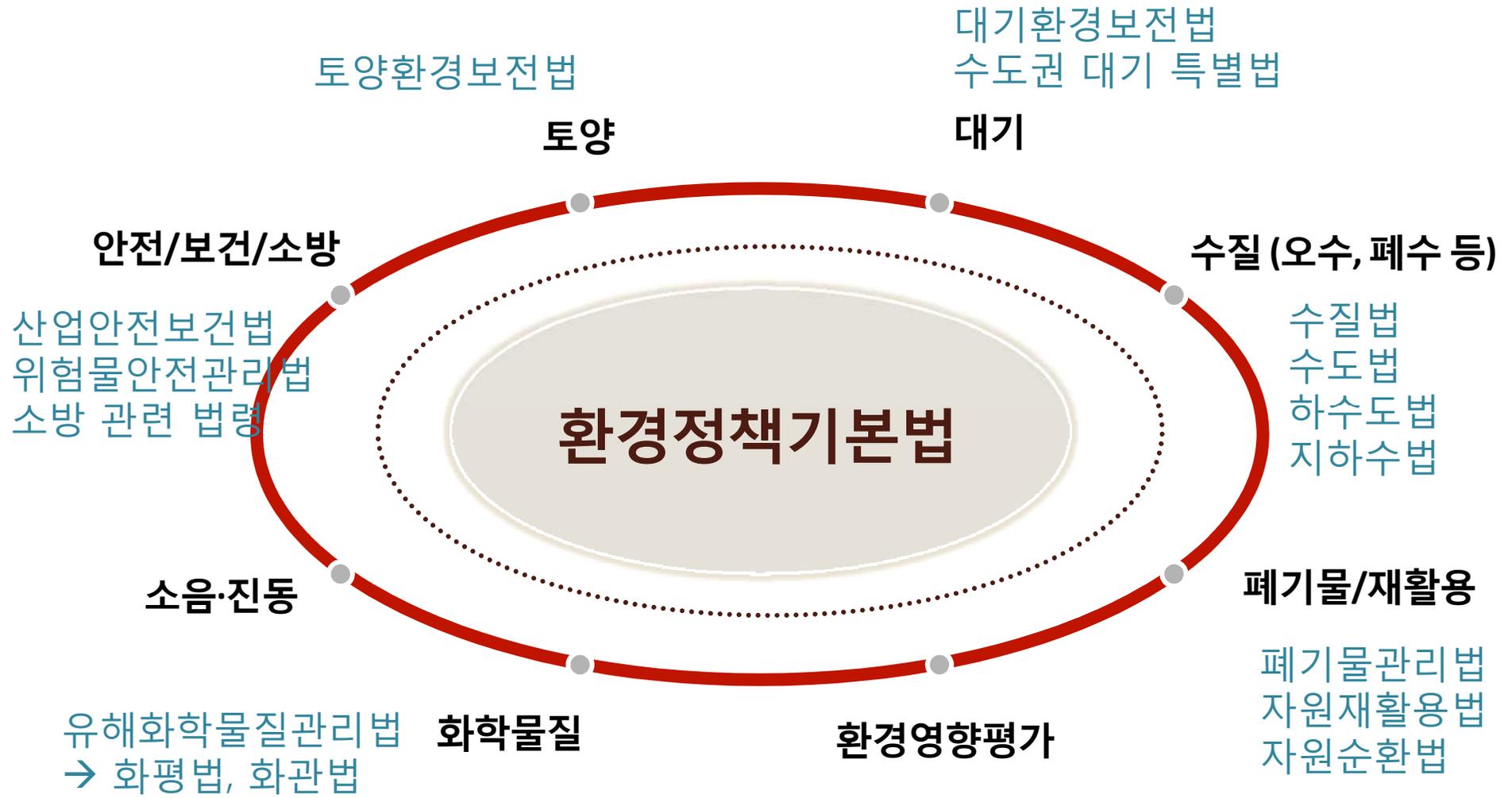
The "상하위법" (Hierarchy) section shows a tree structure:

-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3.25] [법률 제12519호, 2014.3.24, 일부개정]
-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5.26] [대통령령 제26249호, 2015.5.26, 일부개정]
-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6.16] [환경부령 제600호, 2015.6.16, 일부개정]
- 행정규칙
- 행정규칙
- 행정규칙
- 자치법규

The "관계법령" (Related Laws) section l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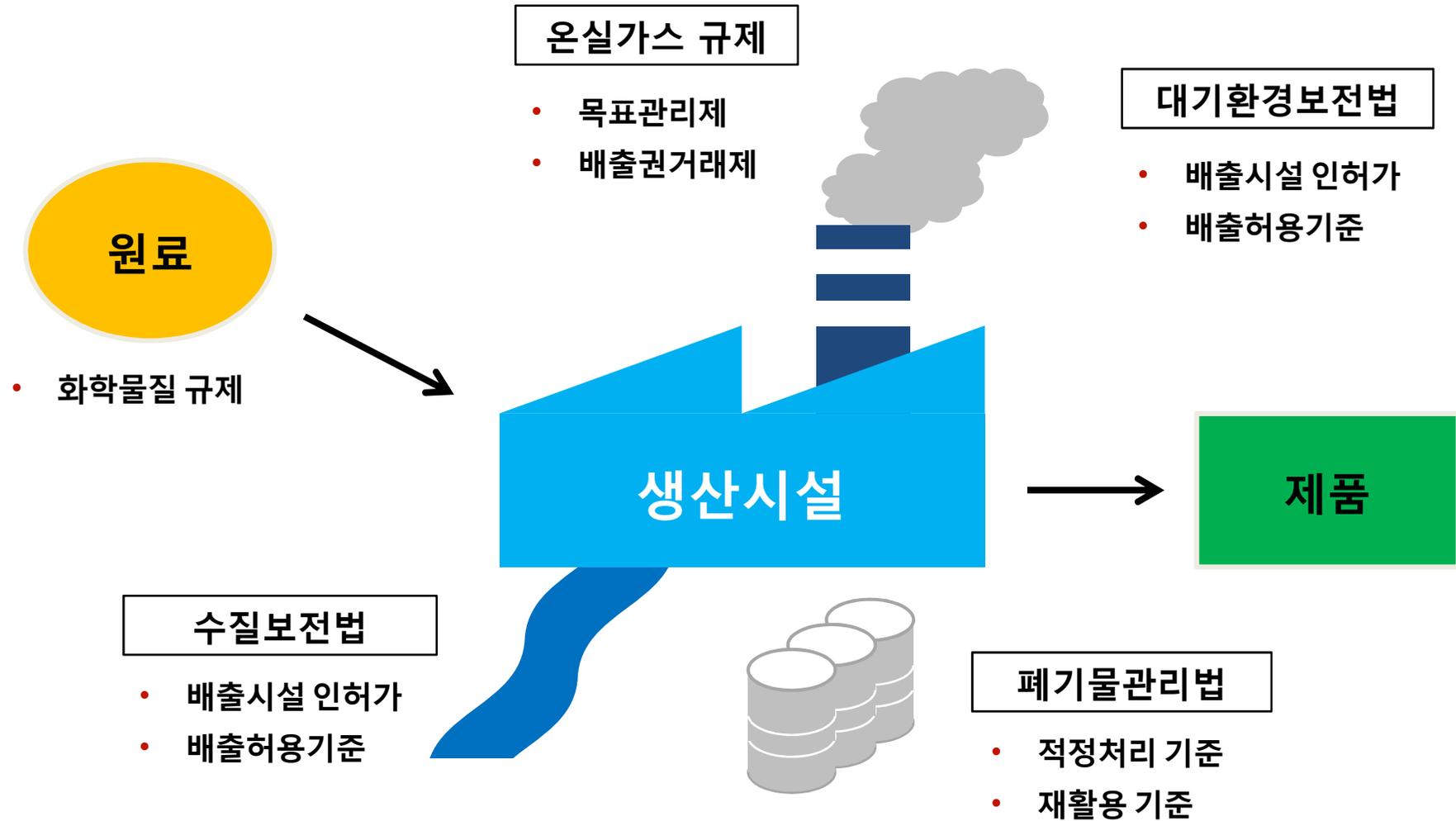
-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3.27] [법률 제13275호, 2015.3.27, 일부개정]

1. 관련 법령의 체계



1 - 2종 대형사업장의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중

1. 관련 법령의 체계



1. 관련 법령의 체계

가. 수질 관련 법령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한강청 고시)
-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지역 및 시설 지정 (금강청 고시)

2)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나. 대기 관련 법령

1)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서울, 인천, 경기도

3) 기타 : 악취방지법, 온실가스 관련 법령

1. 관련 법령의 체계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한강청 고시)>

- [별표 2]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제3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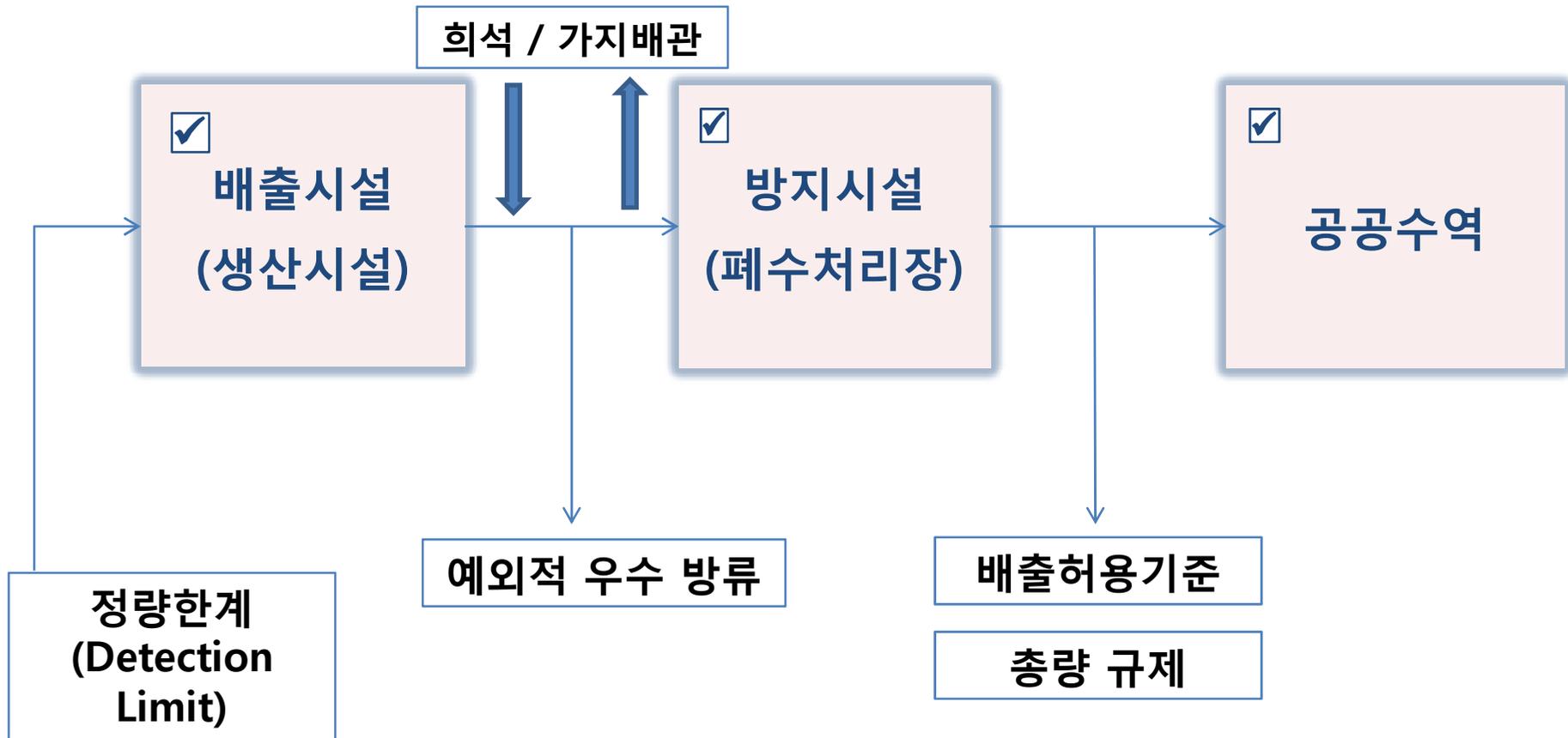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I 권역	특별대책지역 II 권역
대전광역시 1구	동구: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신하동, 신상동, 사성동, 오동, 세천동, 내탑동, 신촌동, 주촌동 ※비룡동 및 세천동 중 대청호 수계 바깥 지역은 제외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지역 및 시설 지정 (금강청 고시)>

- [별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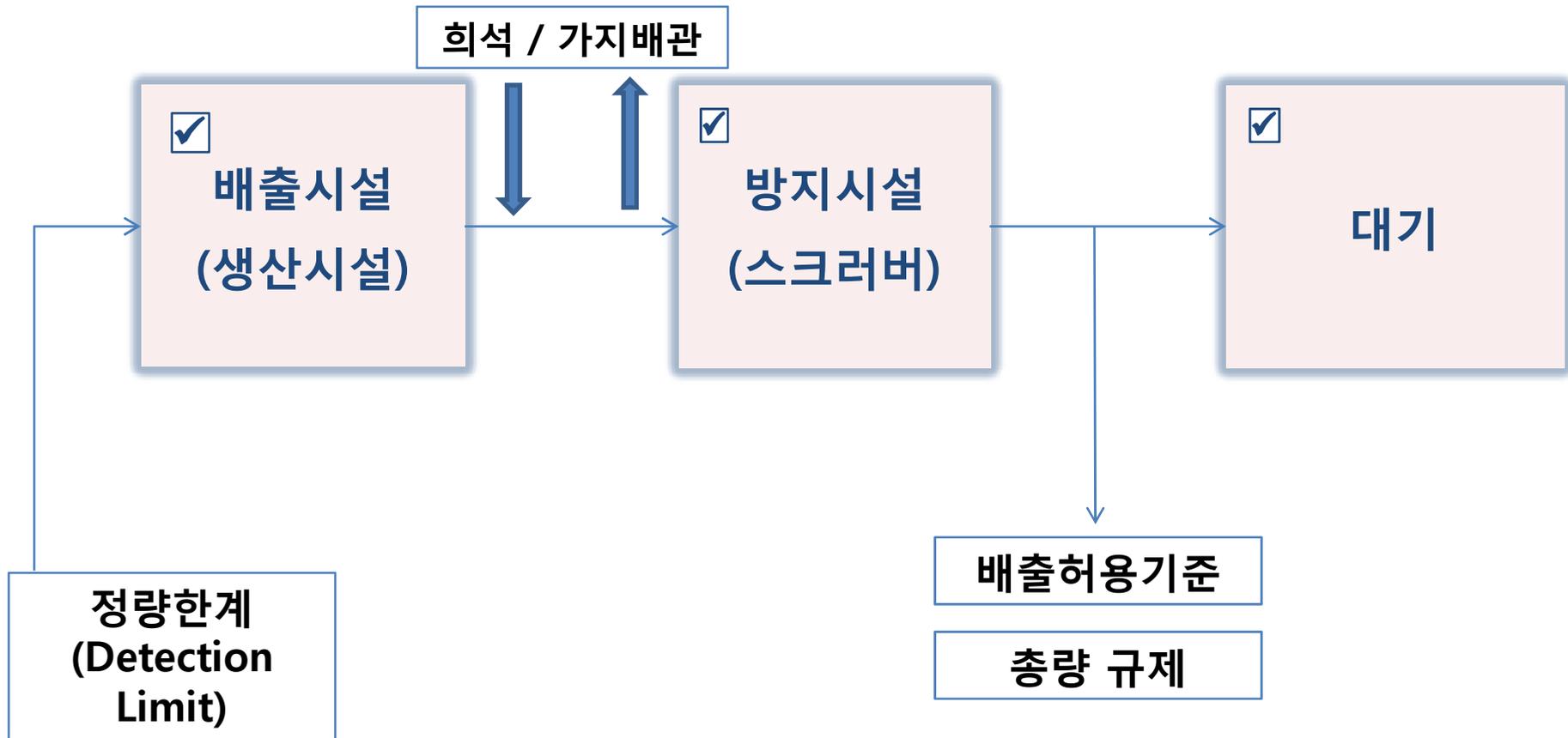
행정구역	대상 지역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세천동, 신상동, 신하동, 신촌동, 사성동, 내탑동, 오동, 주촌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전동, 이현동, 부수동, 황호동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념 (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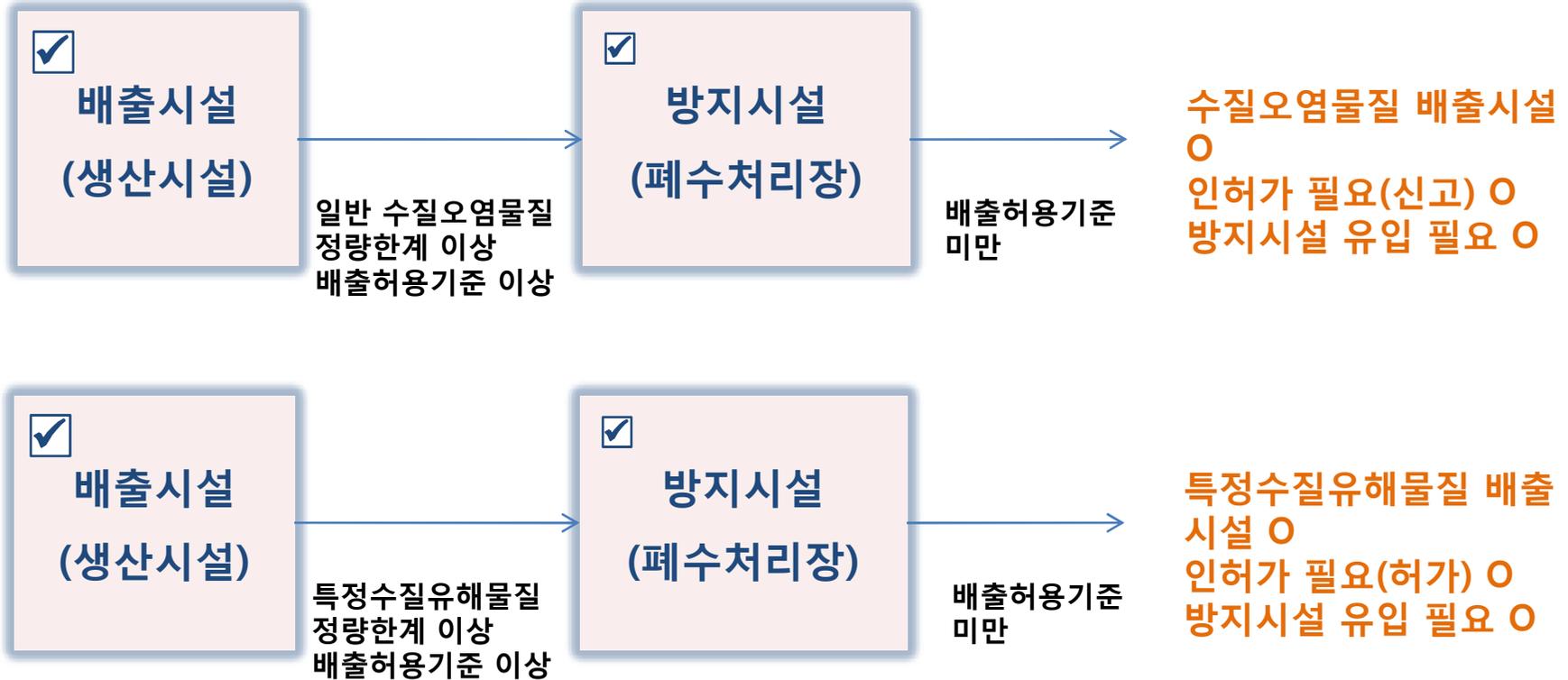
※ 각 물질별 정량한계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확인 가능
(예: 구리의 정량한계 0.008 ppm - 제1법)
(예: 페놀의 정량한계 0.05 ppm - 제1법, 직접법)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념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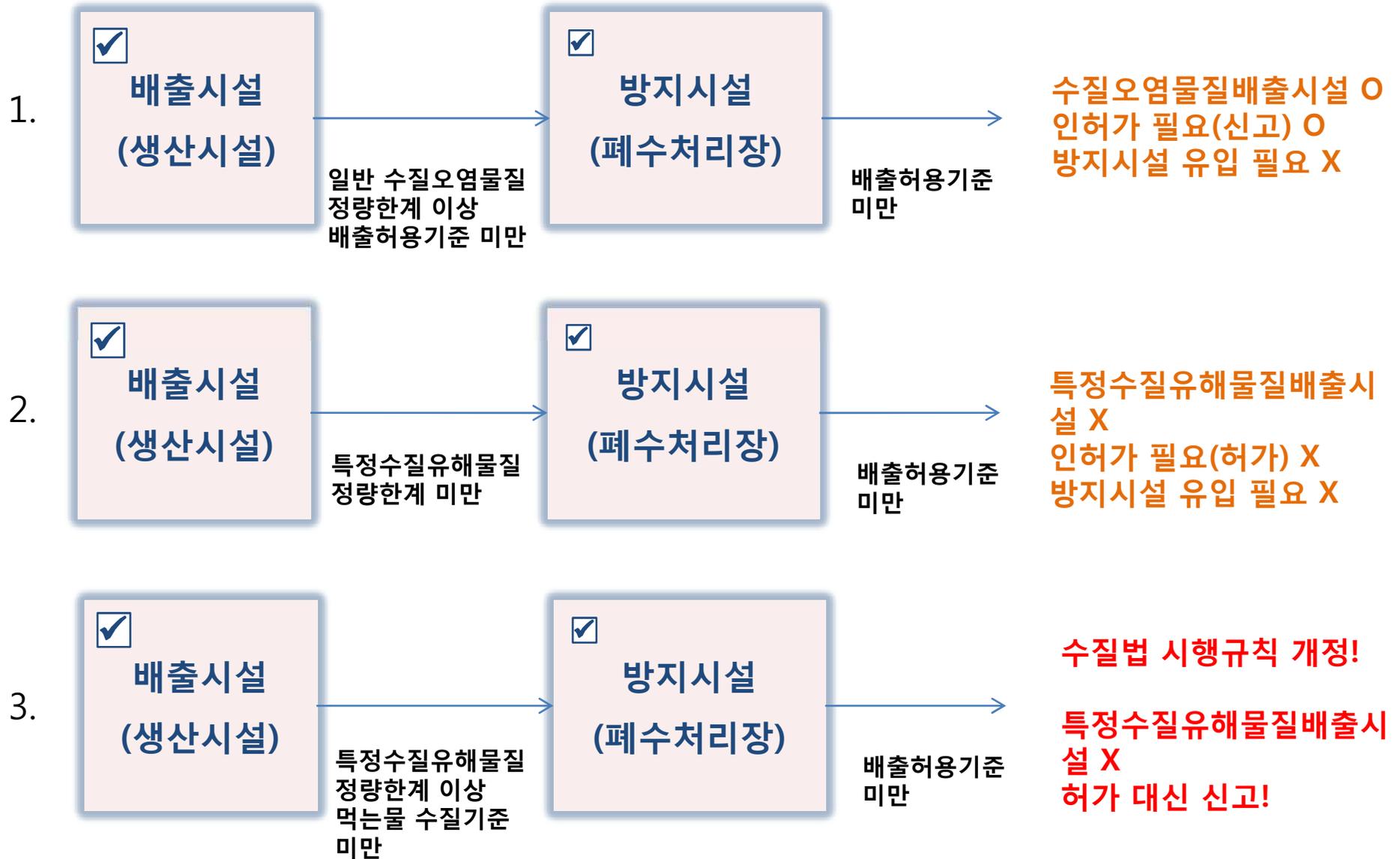


※ 각 물질별 정량한계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확인 가능
(예: 배출가스 중 카드뮴 - 방법검출한계 0.012ppm - 1법)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념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념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념

단속 보도자료 1

☑ 폐수

무허가 배출시설



희석



배출기준 미준수



대기

무허가 배출시설



희석



배출기준 미준수



3. 폐수/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규제

- 가.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수질 / 대기)
- 나.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 수변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다. 대기환경규제지역 / 수도권대기관리지역
- 라. 국토계획법상의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 마.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 (예 : 시화/반월)
- 바. 기타 -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대덕), 도시형 공장,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3. 폐수/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 특별대책지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국토계획법상 규제

-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폐수/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규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승인 요건)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3. 폐수/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규제

수질법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경기일보 - “유해물질 배출? 저사람들 밥줄 끊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263>

연합뉴스 - “이천·용인시의회 ‘기업 몰아내기 단속 그만 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210368>

3. 폐수/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규제

입지규제의 확인 - 지번만 알면 누구나 가능!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발급
2.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계정관리	범례

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정보청구권의 시대

2016. 1. 1. 시행 예정

제15조(정보청구권)

- 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및 사업자는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정보청구권의 시대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

제5조(정보 청구의 방법 등)

-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청구하려는 피해자 또는 사업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제공·열람청구서에 피해사실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의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청구결과 통보서에 제공할 정보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열람의 경우에는 열람의 일시·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시로부터 3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10일의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연장의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 제공명령 신청 방법 등)

-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2. 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정보 제공을 지연한 경우
 3. 사업자가 청구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제공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열람청구서 및 정보청구결과 통보서 사본
 2. 피해사실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의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 명령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제공명령처리대장에 기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명령 여부, 정보 제공 범위·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에 대한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의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명령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정보 제공 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정보 제공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정보 제공 명세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등이 포함된 이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